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6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 곽규택・이헌승・정성국

조승환 • 백종헌 • 박수영

유상범 • 조배숙 • 박준태

주진우 · 김희정 · 장동혁

송석준 · 정연욱 의원

(14인)

제안이유

범죄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하여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중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등으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또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및 금융정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금융정보의 경우에는 소비·은닉이 매우 용이하므로 가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자백시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 목적 달성 시 조회한 자료를 파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 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제4항 신설)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청구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3조)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의 범위에 추가함.

-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안 제29조의2, 안 제29조의3 신설)
 -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 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 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를 "구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

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제24조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족구조금"을 "유족구조금이나 제1 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유족구조금"을 각각 "유족구조금등"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 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

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 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제24조제2항 중 "지급"을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급"을 "지급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자료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 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1.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2. 가해자의 토지 ·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 3.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 4. 가해자의 전세권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 5. 가해자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록자료 및 선박 등기자료
- 6. 가해자가 임차한 주택에 관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료
- 7. 가해자의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해자의 보수·소득 자료(가해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9. 가해자에 대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과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⑤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 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제29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적금·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증서의 가액
 -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
 - ②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 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 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 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 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 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된 금융정보등은 가해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 ⑦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한다.

제4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49조 본문 중 "제47조"를 "제47조제2항 ·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족에 대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3조(구조금 분할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4조(외국인 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행하여진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선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 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 권 주간으로 한다.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신 설>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u>유족구조금</u>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 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 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 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 1. ~ 3. (생략)
- ② (생략)
- ③ <u>유족구조금</u>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람 사이 에서는 해당 각 호에 열거한 순서로 하며, 부모의 경우에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 모를 후순위로 한다.
- ④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u>유족구조금</u>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u>유족구조</u> 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경우
- 3.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u>유</u> <u>족구조금</u>을 받을 수 있는 선 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 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u>한다)</u>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유족구조금등
·.
4
유족구조금등
<u>.</u>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할 수 있는 경우) ① ~ ④ (생 략)

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 "구조피해자" 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6)·(7) (생 략)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이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구 법은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 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경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유족구조금을 지급할 때에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 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⑥·⑦ (현행과 같음)

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 인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 1.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 2. 해당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 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 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 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u>가지고 있는</u> 경우

-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제2 ① (생 략) ①
 - ②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 검찰청 관할 구역(지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청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의 구조금 <u>지급</u>에 관 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③ ~ ⑥ (생 략)

-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u>지급</u>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 기관,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u><신 설></u>

가. 「출입국관리법」 제10
조제2호의 영주자격
나. 「출입국관리법」 제10
조의2제1항제2호의 장기
체류자격으로서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체류자격
제24조(범죄피해구조심의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급 및 제21
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권 대위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결정을 위한 조사 등) ①
지급 및 제
21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
<u> 구권 대위</u>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자료요청) ① 지구심

의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손 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 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 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법원행정처 · 행정안전부 · 국토 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단체 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 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1. 가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 2. 가해자의 토지·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
- 3.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건축 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 <u>장</u>
- 4. 가해자의 전세권에 관한 부 동산 등기정보자료
- 5. 가해자의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록자료 및 선박

등기자료

- 6. 가해자가 임차한 주택에 관 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자료
- 7. 가해자의 입목, 광업권, 어 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 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 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 료
- 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해자의 보수·소득 자료(가 해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는 그 사용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 9. 가해자에 대한 재산세·종 합부동산세 부과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 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 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

<u><신</u> 설>

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⑤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 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 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한다.

제29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지구심의회는 제21조제 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확인할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이 나 그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 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적 금·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 금·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증서의 가액
-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지급금
- ② 지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

 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유죄

- <u>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u> 이 확정된 경우
- 2.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 으로 하는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 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는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이나 그 특정점포에 금융정보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제4조제6항, 제4조의2제5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제47조(벌칙)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된 금융정보등은 가해 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⑦ 지구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 권 추심이 완료되는 등 손해배 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 거나 수집한 금융정보등을 지 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47조(벌칙)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 ①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③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저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④</u> (연행 제2앙과 같음)
제49조(양벌규정)
<u>제47조제2항·제4항</u>